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3.

찬성자 : 장철민 · 허성무 · 박정현
김한규 · 이재관 · 정진욱
박용갑 · 송재봉 · 정준호
부승찬 · 이춘석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.

한편,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· 디자인 · 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9조 등).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전단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2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3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4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5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단서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84조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32조의16의 제목 “(특허심판원)”을 “(지식재산심판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

원”으로 한다.

제136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39조의2제1항 본문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43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44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45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51조제1항 본문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53조의2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54조제5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54조의3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157조제3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64조제3항 전단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65조제5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66조 전단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170조제1항 후단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88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189조제3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216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226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227조제1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2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허심판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판원은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3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3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②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, 제21조,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30조제3항, 제32조제3항, 제43조제4항제4호, 제142조의2제2항, 제154조 후단, 제169조제3항, 제221조제1항, 제22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2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, 제12조제4항,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17조제2항 전단, 제1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2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, 제29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, 제30조제1항, 제31조제1항, 제32조제1항,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55조, 제87조제2항, 제125조의2제1항 본문,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

부분, 제130조제1항, 제131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132조제1항, 제138조제1항 본문, 제141조, 제142조제4항, 제145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, 제152조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153조제5항, 제154조 전단, 제16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20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후단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, “특허심판원장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④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, 제21조,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30조제3항, 제32조제3항, 제141조의2제2항, 제153조 후단, 제165조제3항, 제232조제1항,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, 제12조제4항,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17조제2항 전단, 제1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2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, 제29조제1항

부터 제3항까지, 제30조제1항, 제31조제1항, 제32조제1항,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9조, 제62조제4항 후단, 제79조제2항, 제124조의2 제1항 본문,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129조제1항, 제13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131조제1항, 제137조제1항 본문, 제140조, 제141조제4항, 제144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, 제151조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152조제5항, 제153조 전단, 제16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215조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⑥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특허심판원장”을 “지식재산심판원장”으로 한다.

제46조, 제47조제1항,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특허심판원”을 각각 “지식재산심판원”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“특허심판원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“지식재산심판원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개별대리)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.	제9조(개별대리) ----- ----- ----- 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 ----- -----.
제10조(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) ① ~ ③ (생략)	제10조(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 ----- ----- -----.
제11조(복수당사자의 대표)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	제11조(복수당사자의 대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한다. 다만, 대표자를 선정하여
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
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
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5조(기간의 연장 등) ① (생략)

② 지식재산처장 · 특허심판원
장 · 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
에 따른 심사관(이하 “심사관”
이라 한다)은 이 법에 따라 특
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
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
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
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
있다.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
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
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
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
결정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6조(절차의 무효) ① 지식재산
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
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
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

----. -----
-----지식재산심
판원장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기간의 연장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지식재산심
판원장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절차의 무효) ① -----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. 다만,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.

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·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

-----.

-----.

② 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-----.

③ 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
제19조(절차의 속행) 지식재산처 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<u>특허</u> <u>심판원</u> 에 계속(係屬)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(續行)하 게 할 수 있다.	제19조(절차의 속행) ----- ----- ----- <u>지식</u> <u>재산심판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0조(절차의 중단)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 재산처 또는 <u>특허심판원</u> 에 계 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. 다 만,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	제20조(절차의 중단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식재산심판원</u>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중단된 절차의 수계) 제20 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<u>특</u> <u>허심판원</u> 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(受繼)하여야 한다.	제21조(중단된 절차의 수계) --- ----- <u>지</u> <u>식재산심판원</u> ----- ----- -----.

제23조(절차의 중지) ① 지식재산
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
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
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
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
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
다.

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제28조(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)

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, 청구서, 그 밖의 서류(물건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

제23조(절차의 중지) ① -----

-----지식재
산심판원-----

--.

[illegible]

제28조(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)

① -----

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제1항의 출원서, 청구서,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「특허협력조약」 제2조(vii)에 따른 국제출원(이하 “국제출원”이라 한다)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1. 2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28조의2(고유번호의 기재)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--.

②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-----.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의2(고유번호의 기재) ①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<u>특허심판원장</u>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	② -----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.
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<u>특허심판원장</u>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	③ -----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④ ~ ⑥ (생략) 제28조의3(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)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<u>특허심판원장</u>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,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,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	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8조의3(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) ① ----- ----- ----- 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
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.

④ (생략)

제28조의4(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)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,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8조의5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) ① 지식재산처장·특허심판원장·심판장·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

----지식재산심판원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의4(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) ① -----

-----지식
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의5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) ① -----
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지 및 송달(이하 “통지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지식 재산심판원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33조(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)	제33조(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)
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(遺贈)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지식재산심판원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6조(절차의 보정) 지식재산처	제46조(절차의 보정) -----

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84조(특허료 등의 반환) ① (생략)

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32조의2(특허취소신청)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특허료 등의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2조의2(특허취소신청) ① 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32조의4(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)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32조의16(특허심판원) ① 특허·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,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·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청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.

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.

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.

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2조의4(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) ①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2조의16(지식재산심판원) ①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-----
--.

② 지식재산심판원-----
-----.

③ 지식재산심판원-----

-----.

④ 지식재산심판원-----

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6조(정정심판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
1.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. 다만,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(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)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2.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

③ ~ ⑪ (생략)

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

-----.

제136조(정정심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지식재산심판원

-----.

-----.

2. -----
-----지식재산심판원-----

③ ~ ⑪ (현행과 같음)

⑫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

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⑬ (생략)

제139조의2(국선대리인)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(이하 “국선대리인”이라 한다)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. 다만,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·③ (생략)

제140조(심판청구방식)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제140조의2(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)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

-----.

⑬ (현행과 같음)

제139조의2(국선대리인) ① 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40조(심판청구방식) ①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40조의2(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) ① -----

를 <u>특허심판원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② (생략) 제143조(심판관) ① <u>특허심판원장</u>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. ②·③ (생략) 제144조(심판관의 지정) ① <u>특허심판원장</u>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② <u>특허심판원장</u>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. 제145조(심판장) ① <u>특허심판원장</u>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제151조(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)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	---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143조(심판관) ① 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44조(심판관의 지정) ① 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145조(심판장) ① 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51조(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) ① ----- -----
--	---

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
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 다만, 구술심리를
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53조의2(심판관의 회피) 심판
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
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
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54조(심리 등) ① ~ ④ (생
략)

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
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
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
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
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
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.

⑥ ~ ⑨ (생 략)

제154조의3(참고인 의견서의 제
출) ① (생 략)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
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
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
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 략)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3조의2(심판관의 회피) 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
장-----
-----.

제154조(심리 등) ① ~ ④ (현행
과 같음)

⑤ -----

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54조의3(참고인 의견서의 제
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지식재산심판원-----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57조(증거조사 및 증거보전)

①·② (생략)

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,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.

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.

⑤ (생략)

제164조(소송과의 관계) ①·② (생략)

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그 심판청구서의 각

제157조(증거조사 및 증거보전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④ 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64조(소송과의 관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④ 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하결정,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 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----- -----.
제165조(심판비용) ① ~ ④ (생 략)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 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 에 따라 <u>특허심판원장</u>이 결정 한다.	제165조(심판비용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.
⑥ · ⑦ (생 략) 제166조(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) 이 법에 따라 <u>특허심판원장</u>이 정한 심판비용 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<u>특허심판원</u> 소속 공무 원이 부여한다.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 제166조(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) ----- <u>지식재산심판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<u>지식재산심판원</u>----- -----.
제170조(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 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)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 · 제2호, 같은 조 제4항, 제51조, 제63조,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“제47조제1항제2호 및	제170조(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 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

제3호에 따른 보정”은 “제4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(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)”으로, 제63조의2 본문 중 “지식재산처장”은 “특허심판원장”으로 본다.

② (생략)

제188조(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
정본 송부) ① 법원은 제186조
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
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
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
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
야 한다.

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(審級)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.

제189조(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)

① · 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
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
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

-----지식재산심판원
장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8조(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
정본 송부) ① -----

---지식재산심판원장-----
-----,

② _____

_____지식재산심판원장

_____.

제189조(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-----

속한다.

제216조(서류의 열람 등) ① 특허출원, 특허취소신청, 심판 등에 관한 증명,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,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226조(비밀누설죄 등)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(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)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

-----.

제216조(서류의 열람 등) ① ----

-----지식
재산심판원장-----
-----.

② -----지식재
산심판원장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26조(비밀누설죄 등) ① 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-

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제227조(위증죄) ① 이 법에 따라
선서한 증인, 감정인 또는 통역
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
짓으로 진술·감정 또는 통역
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
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제2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
과한다.

1. 「민사소송법」 제299조제2
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
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
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
한 자

2.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
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
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
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
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
에 따르지 아니한 자

3.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·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7조(위증죄) ① -----

-----지식재산심판원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2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지식재
산심판원-----

2. 지식재산심판원-----

3. 지식재산심판원-----

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 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 서·진술·증언·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